

독일 연방헌법재판소

국가개요

1. 국명 : 독일 (Bundesrepublik Deutschland)
2. 수도 : 베를린(Berlin)
3. 인구/면적 : 8,319만명(2020년 기준) / 357,582km²(한반도의 1.6배)
4. 공용어 : 독일어
5. 1인당 GDP : 47,603달러(2018년 기준)
6. 정부형태 및 의회 : 내각책임제/양원제

1. 조직

가. 재판부의 구성

- 2개의 재판부(Senate)로 구성
 - 각 재판부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, 현재 제1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, 제2재판부는 부소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음
 - 원칙적으로 제1재판부는 기본권 보호를 담당하고 제2재판부는 국가질서에 관한 소송(권한쟁의, 연방국가적 쟁의)을 담당, 현재는 이러한 구분이 완화되어 제2재판부에서도 헌법소원 담당
- 각 재판부에는 그 소속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(Kammer) 3개를 설치하고 있음. 지정재판부는 주로 헌법소원심판의 수리·불수리 여부를 심사함. 반면, 헌법소원이 명확히 이유있는 경우로서 법적 관점이 이미 재판부에서 결정된 바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기도 함.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항상 재판부가 결정함
- 전원합의체(Plenum)는 재판관 16인 전부로 구성됨. 특정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의 법정의견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전원합의체가 심판함
전원합의체는 조직관리 업무도 담당하며, 법적 권한범위 내에서 재판부의 관할권도 규제함

나. 재판관의 자격·임기·정년 등

- 독일 법관법상 법관자격을 가진 자
- 40세에 달하고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한 자
- 재판관의 임기는 12년, 연임·중임 불가
- 정년은 68세가 되는 월의 말일
- 재판관은 독일대학의 법학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, 기타의 직업적 활동은 불가

다. 재판관의 선출

- 각 재판부의 재판관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의해 각각 2분의 1(4명)씩 선출
- 각 재판부의 재판관 3인은 연방대법원의 법관 중에서 선출(연방최고법원에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법관만이 피선거격)
- 연방대법관 중에서 임명될 재판관(3명)은 두 선출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이 1인을 선출하고 다른 한 기관이 2인을 선출. 나머지 재판관(5명)은 연방대법관 1인을 뽑은 기관이 3명을 선출하고 2인을 뽑은 기관이 2명을 선출
-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의 재판관 선출은 3분의 2의 가중다수결로 선출
- 연방의회에서의 재판관 선출은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 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는데, 12인 중 8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재판관으로 선출
- 연방참사원에서는 표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
-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교대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하는데, 부소장은 소장이 속하지 않는 재판부에서 선출되어야 하고, 최초선거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소장을 선출하고 연방참사원이 부소장을 선출
- 연방대통령이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선출된 자를 임명

2. 권한

가. 기관쟁의

- 헌법기관(연방최고기관)들 사이에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
-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유사

나. 연방국가적 쟁송

- 연방과 주 사이의 헌법분쟁에 대하여 심판
- 연방과 주 간, 상이한 주들 상호간 또는 동일한 주의 기관 상호간에 공법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연방행정재판소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타의 소송방법이 없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

다. 규범통제

-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 그 법률을 무효로 하는 제도
- 연방의 법률이나 주의 법률이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위반되거나 주의 법률이 연방의 법률에 저촉되어 분쟁이 발생할 때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
- 어떤 법률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그 위헌성이 문제되어 여기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내리는 경우(구체적 규범통제)에는 법관의 위헌제청이 있어야 함
- 재판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위헌심판(추상적 규범통제)은 연방정부·주정부 또는 연방의회의원 3분의 1의 신청이 있어야 함

라. 헌법소원

-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
-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중에 사법권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고 있음
-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. 주의 법률에 의하여 자치행정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

주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을 때에만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

마.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

- 연방대통령이 헌법이나 연방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이 탄핵심판을 신청하면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
- 법관이 헌법과 주법률의 합헌적 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때 연방의회가 탄핵심판을 신청하면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
-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때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권한을 가짐

바. 기타

- 개인의 기본권을 실효시키는 심판을 할 수 있음
- 선거의 효력 또는 연방의회 의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소원심판권을 가짐

3. 평의·재판

- 재판에 관여한 재판부 재판관의 다수결로 재판. 단, 기본권 상실, 정당 해산, 탄핵심판의 경우와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3분의 2의 찬성 필요
- 각 재판부는 8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
-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법적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가 그에 대하여 재판
- 평의에서 다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‘각 재판관이 제시한 이유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고려함이 없이 중국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(주문별 평의방식)’이 아니라, ‘제기된 법적 및 사실적 문제들을 대상으로 한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(쟁점별 표결방식,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 제27조 제2문 참조)’
- 심판청구의 적법성(심판청구적격, 청구의 형식과 청구기간의 준수 등)이나 심사의 범위에 관한 소송법적 문제들에 대해 먼저 표결이 있고, 그 이후에 본안

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짐. 그 경우 적법요건판단에서 다수의견이 적법성을 긍정하면 각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본안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을 제시해야 함(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195조 참조)

- 본안심사에서 문제된 각 쟁점별로 평의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 (예컨대, BVerfGE 22, 180 결정의 경우 각 쟁점별로 “이 결정은 4 : 3에 의한 것이다.” 라거나 “이 결정은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다.”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)

4. 연락처

- 주소 : Schlossbezirk 3, 76131 Karlsruhe, Germany
(Postfach 1771, 76006 Karlsruhe)
- 전화번호 : +49 0721/9101-0
- 팩스번호 : +49 0721/9101-382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bundesverfassungsgericht.de/>

(2021. 2. 작성)